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관계 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자료 등의 범위) ① 법 제20조의4제1항에 따라 가스도매사업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하는 「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2.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급여신청 또는 등록에 관한 사항
 -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또는 교육급여의 수급자
 -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사람
 - 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 라목에 따른 희귀난치성질환 또는 중증질환을 가진 사람으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 받는 사람
 - 3) 「장애인복지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장애수당을 지급받는 18세 이상의 사람
 - 4) 「장애인복지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18세

미만의 사람

5)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라 지원받는 모자가정, 부자가정, 조손가정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8조제4항에 따라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람

라.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 중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

3.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요청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등록사항
가.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시행령 제4조에 따라 1급부터 3급까지의 장애등급을 받은 사람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라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또는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권리를 이전받은 유족 1인

4.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요청하는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3호의 가정위탁보호 확인서와 「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위탁가정에 대한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② 법 제20조의4제2항에 따라 가스도매사업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 “가스사용자의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1. 가스사용자의 개인정보: 자격정보,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연락처, 자격취득일,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2. 가스사용자의 가스사용 현황: 가스사용량, 가스사용요금, 도시가스요금
경감금액 및 경감대상 수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10조의2(관계 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자료 등의 범위) ① 법 제20조의4제1항에 따라 가스도매사업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하는 「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2.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급여 신청 또는 등록에 관한 사항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또는 교육급여의 수급자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
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 중 다음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사람

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 라목에 따른 희귀

난치성질환 또는 중증질환을

가진 사람으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 받는 사람

3) 「장애인복지법」 제49조제1항

에 따른 장애수당을 지급받는

18세 이상의 사람

4) 「장애인복지법」 제50조제1항

에 따른 장애아동수당을 지급

받는 18세 미만의 사람

5)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에 따라 지원받는 모자가정,

부자가정, 조손가정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

규칙」 제38조제4항에 따라 차

상위계층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람

라.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의
한 장애인 중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장애의 정
도가 심한 사람

3.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요청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등록사항

가.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시행령 제4조에 따라 1급부터
3급까지의 장애등급을 받은 사
람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시행
령 제14조 제3항에 따라 1급부
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
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또는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권리를 이전받은 유족 1인

4.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행정안전
부장관에게 요청하는 「아동복
지법」 제15조제1항제3호의 가
정위탁보호 확인서와 「주민등
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위
탁가정에 대한 주민등록전산정
보자료

② 법 제20조의4제2항에 따라 가스
도매사업자, 시·도지사 또는 시
장·군수·구청장이 일반도시가스
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 “가
스사용자의 정보”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1. 가스사용자의 개인정보: 자격정
보,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연락처,
자격취득일, 세대주 및 세대주
와의 관계

2. 가스사용자의 가스사용 현황:
가스사용량, 가스사용요금, 도시
가스요금 경감금액 및 경감대상

	수	
--	---	--